

# 공 보

**제687호 2019. 3. 6.(수)**

선 결	기관의 장

## 규 칙

거창군 규칙 제1255호 행정안전부 한자어 등 기획정비과제 정비를 위한 거창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 3

거창군 규칙 제1256호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 6

## 훈 령

거창군 훈령 제429호 거창군 법무행정 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 ..... 21

##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19-22호 도로명주소 고시 ..... 26

##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19-256호 거창군 삶의쉼터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8

거창군 공고 제2019-263호 공시송달 공고 ..... 35

거창군 공고 제2019-275호 거창군 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76호선 외2)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36

거창군 공고 제2019-276호 공인 폐기·등록 공고 ..... 38

거창군 공고 제2019-277호 송정 마동마을(소로3-26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계획 열람공고 ..... 40

거창군 공고 제2019-289호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 44

거창군 공고 제2019-292호 2019년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보수 보조사업 신청 안내 공고 .. 45

거창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19-7호 제23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 49

회 관									
--------	--	--	--	--	--	--	--	--	--

발행 : 거창군 /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행정 3043)

행정안전부 한자어 등 기획정비과제 정비를 위한 거창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등 일괄 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거창군수 구인모

---

2019년 3월 6일

거창군 규칙 제1255호

행정안전부 한자어 등 기획정비과제 정비를 위한 거창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

제1조(「거창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의 개정) 「거창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개정한다.

제2조(「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한다.

제3조(「거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의 개정) 「거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제40조제목·제2항·제4항, 제44조제목·제1항·제2항·제3항, 제45조제목·제3항, 제49조제5항, 제56조제2항·제3항, 제89조제2항, 제97조

제1항 중 “기장”을 “기록”으로, 제28조제1항 중 “계기”를 “열거”로, 제45조제1항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한다.

제4조(「거창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규칙」의 개정) 「거창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제40조제목·제2항·제4항, 제44조제목·제1항·제2항·제3항, 제45조제목·제3항, 제49조제5항, 제56조제2항·제3항, 제89조제2항, 제97조제1항 중 “기장”을 “기록”으로, 제28조제1항 중 “계기”를 “열거”로, 제45조제1항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행정안전부 한자어 등 기획정비과제 정비를 위한 거창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의안 번호	2019-7
----------	--------

제출연월일	2019. 2. 18.
제 출 자	기획예산담당관

## 1. 제안 이유

행정안전부에서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획정비 과제로 자치법규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와 호적법 관련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개선하기 위하여 일괄개정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일본식 한자어, 호주제 관련 용어 일괄정비(안 제1조~제4조)

1) 4개 규칙 22개 조문

2) 본적⇒등록기준지, 계리⇒회계처리, 기장⇒기록, 계기⇒열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어기본법」 제14조, 「지방자치법」 제23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부서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2. 1.~2. 21.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  
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거 창 군 수 구 인 모

---

2019년 3월 6일

거창군 규칙 제1256호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체결)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  
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과 협약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금의 대출·상환에 관한 사항
2. 용자 재원 운용·정산·반납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용자 조건·절차·환수 등에 관한 사항

4. 금융기관 수수료에 관한 사항
5. 융자금 상환·대출의 실적보고나 검사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조(융자신청 절차)**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융자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붙여 별지 제1호서식이나 별지 제2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읍·면장은 융자신청이 있을 경우 사실 여부와 구비서류를 검토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대상자 추천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4조(융자지원 대상자)**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자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1. 해당 읍·면에서 비교적 소득수준이 낮은 농업인
2. 자립 의욕과 능력이 있는 농업인
3. 해당 읍·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생산자단체, 공동사업장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2. 제3조제1항의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적은 경우
3. 그 밖에 융자목적에 맞지 않아 융자가 곤란한 경우로서 거창군 농업발전자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자

**제5조(융자지원 시기·계획)** ① 융자금은 매년 상반기에 지원하고, 해당연도에 계획된 융자규모보다 신청한 금액이 적을 경우 하반기에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농업재해 피해복구를 위한 융자지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시지원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 범위에서 매년 융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읍·면장과 금융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용자조건) 군수는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협약시 용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퍼센트로 하되, 금리변동과 예산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점검) ① 금융기관은 매 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협약서상 요구되는 보고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협약사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용자 지원계획 추진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3. 용자 지원계획 변경의 필요성 여부
4. 그 밖에 용자금 지원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변경사항 통보) 용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운영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지체 없이 이를 군수와 금융기관에 알려야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용자 신청서(농업인 개인용)

- 성 명: (생년월일: )
- 주 소: 거창군
- 연 락 처: ☎ 휴대전화:
- 주 작 목:
- 영농경력:
- 영농규모:
- 연간소득규모:
- 용자신청금액: 백만원 (□생산자금, □시설자금)
- 현재 용자 대출금액:

위와 같이 용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임: 사업계획서 1부

거창군수 귀하

< 뒷 면 >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다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를 읽고 동의해 주십시오.

### ◎ 필수동의 항목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조례」에 농업인들의 경영안정과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융자사업 지원에 있어 지원대상자의 자격확인과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
- 이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다음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활용 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 2. 개인정보 수집 필수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농지원부, 연락처 등
- 신용거래정보(이 신청 이전 및 이후의 거래내용 포함)
  - 카드 정보, 개인대출 및 채무보증 한도, 사용금액(현금서비스 포함), 연체기록 등
  - 가계당좌예금 개설·해지

#####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추천서 등에 기록된 정보는 사업완료 후 3년간 보유한 후 폐기처분

#####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거부와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지원신청서 접수·등록 불가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선택동의 항목

####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안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전자적으로 신청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이용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이의 없음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서명)

거창군수 귀하

<붙임서식>

# 사업계획서

(농업인 개인용)

## 1. 개요

성명		주소				
연락처		농지규모	전 (제곱미터)	답 (제곱미터)	과수원 (제곱미터)	시설하우스 (제곱미터)
농업경력		가축규모	축종:		두수:	
주요 생산실적			생산 능력			
종별	단위	수량	제품별	단위	수량	

## 2. 사업계획

1) 사업명:

2) 사업장위치:

3) 사업기간:

4)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융자금	자부담	비고
(100퍼센트)	( 퍼센트)	( 퍼센트)	

5) 세부사업계획

(단위: 원)

세부사업내용	규격	단위	수량	금액	비고

[별지 제2호서식]

## 용자신청서(법인·생산자단체용)

- 법인·생산자단체명:
-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 대표자: (생년월일: (남/여))
- 소재지:
- 연락처:
- 설립일:
- 자본금:
- 주요생산품목:
- 연간소득액:
- 종업원·참여수:
- 용자신청액: 백만원 (□생산자금, □시설자금)

위와 같이 용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임: 사업계획서 1부

거창군수 귀하

< 뒷 면 >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다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를 읽고 동의해 주십시오.

### ◎ 필수동의 항목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조례」에 농업인들의 경영안정과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융자사업 지원에 있어 지원대상자의 자격확인과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
- 이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다음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활용 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 2. 개인정보 수집 필수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농지원부, 연락처 등
- 신용거래정보(이 신청 이전 및 이후의 거래내용 포함)
  - 카드 정보, 개인대출 및 채무보증 한도, 사용금액(현금서비스 포함), 연체기록 등
  - 가계당좌예금 개설·해지

#####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추천서 등에 기록된 정보는 사업완료 후 3년간 보유한 후 폐기처분

#####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거부와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지원신청서 접수·등록 불가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선택동의 항목

####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안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전자적으로 신청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이용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이의 없음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서명)

거창군수 귀하

<붙임서식>

# 사업계획서

(법인·생산자단체용)

## 1. 사업체 개황

### 1) 개요

(단위: 원)

업체명		대표자	(남/여)	주소				
업종		주요제품		설립일				
납입자본		매출액		구분	법인, 생산자단체			
종업원수	상시:	임시:		거래은행	주: 부:			
특기사항								
사업장		주요생산시설			생산능력			
소재지	규모	생산제품	종별	단위	수량	제품별	단위	수량

### 2) 경영자 현황(실질경영자: )

직위	성명 (남/여)	나이	실질경영자와 관계	학력	주요경력

### 3) 주주현황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 4) 연혁

일자	내용

## 2. 운영상황

(단위: 원)

구 분		전년도		해당연도( 년)		추정( 년)		
	품명	단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원	재	료						
조								
달								
	계							
생								
산								
현								
황	계							
판								
매								
현								
황	계							

주) 원재료조달액 = 제조원가 명세상의 해당연도 원재료 매입액  
 생 산 실 적 = 손익계산서상의 해당연도 제품 제조원가  
 판 매 실 적 =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 3. 재무상태

#### 1) 요약대차대조표

(단위: 원)

구 분	전년도말 (년)	해당연도말 (년)	추정 (년)	구 분	전년도말 (년)	해당연도말 (년)	추정 (년)
유동자산				유동부채			
당좌자산 (외상매출) (받을어음)				(외상매입) (지급어음)			
재고자산				고정부채			
그 밖의 유동				이연부채			
투자기타자산				부채총계			
고정자산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당기순익)			
이연자산				자본총계			
자산총계				부채자본총계			

#### 2) 요약손익계산서

구 분	전년도말 (년)	해당연도말 (년)	추정 (년)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관리비 (감가상각비)			
영업이익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금융비용)			
경상이익			
특별손익			
세전손이익			
당기순이익			



### 3) 요약제조원가명세서

구분	전년도말 (    년)	해당연도말 (    년)	추정 (    년)
당기제조비용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감가상각비)			
기초재공품			
재고			
기말재공품			
재고			
타계정대체			
당기제품제조			
원가			

## 4. 사업계획

### 가. 생산자금

#### 1) 매출 및 손익전망

(단위: 백만원)

구분	해당연도	년	년	3년평균	과거 3년평균
추정매출액					
매출증가율					
손 이 익					

#### 2)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단위: 백만원)

소 요 자 금				조 달 계 획				
원재료비	인건비	그 밖에	계	자기자금	증자	차입금	그 밖에	계

## 나. 시설자금

(단위: 백만원)

신증설	사업명						신증설, 매입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시설규모				소요자금		조달계획	
	공사 착공일				소요액	금액	자금구분	금액
	건설 기간						자기자금	
	완공 예정일						증차	
	가동 예정일						차입금	
	공사 진척도							
	연간생산 능력증가	기존제품:						
신제품:								
					계		계	
매입	매입 시설명	매입처	규모	매입 금액	대금 미납액	연간생산 증대효과		비고

[별지 제3호서식]

용자지원대상자 추천서						
추천 대상 자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전 화 번 호	
	주 소					
사업 내용	용 자 신청금액			사 업 장 위 치		
	사 업 명		사 업 장		사 업 기 간	
추천 사유						
<p>위 사람은 용자지원대상자로 적합하므로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추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읍·면장 (직인)</p> <p style="text-align: left; margin-top: 20px;">거창군수 귀하</p>						

#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19-20
----------	---------

제출일자	2019. 2. 18.
제 출 자	농업기술센터소장

## 1. 개정이유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전부개정 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금융기관과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 나. 용자신청 절차를 정함(안 제3조)
- 다. 용자지원 대상과 지원제한 대상을 정함(안 제4조)
- 라. 용자금 지원시기, 지원계획 통보에 관하여 정함(안 제5조)
- 마. 용자조건을 정함(안 제6조)
- 바. 금융기관에 대한 점검에 관하여 정함(안 제7조)
- 사. 변경사항 통보에 관하여 정함(안 제8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3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9. 1. 24.~2.13.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법무행정 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거창군수

서명생략

2019년 3월 6일

거창군 훈령 제429호

### 거창군 법무행정 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

거창군 법무행정 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제7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실과소”를 “본청 담당관·과, 직속기관, 사업소(이하 “부서”라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 중 “실과소”를 “부서”라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중 “실과소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3조(자치법규 제정 및 폐쇄)</b> ① 조례, 규칙(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이하 "개폐"라 한다)에 관하여는 <u>기획감사실장</u>이 주관한다.</p> <p>② 각 <u>실과소</u>에서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u>기획감사실장</u>에게 심사의뢰를 하여야 한다. 1.~5. (생략)</p> <p>③ 각 <u>실과소</u>에서 자치법규의 제정 및 폐쇄시에 원안작성단계, 선행절차 이행단계, 원안확정단계를 거쳐야 한다.</p> <p>④ 원안작성단계에서 방침결정, 초안작성, 업무관련 부서간 의견조정은 법제담당 부서인 <u>기획감사실</u>의 검토를 거쳐서 실시한다.</p> <p>⑤~⑥ (생략)</p> <p>⑦ 원안확정단계에서 <u>기획감사실장</u>의 심사필 확인 "별표 4"을 사전에 받고 조례 규칙심의회에 부의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b>제4조(심사)</b> ① 각 <u>실과소</u>로부터 심사의뢰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u>기획감사실장</u>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u>실과소장</u>에게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1.~5. (생략)</p> <p>② <u>기획감사실장</u>은 자치법규를 심사할 때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해당 실과 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수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b>제3조(자치법규 제정 및 폐쇄)</b> ① 조례, 규칙(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이하 "개폐"라 한다)에 관하여는 <u>기획예산담당관</u>이 주관한다.</p> <p>② 각 <u>본청 담당관과, 직속기관, 사업소(이하 "부서"라 한다)</u>에서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u>기획예산담당관</u>에게 심사의뢰를 하여야 한다. 1.~5. (현행과 같음)</p> <p>③ 각 <u>부서</u>에서 자치법규의 제정 및 폐쇄시에 원안작성단계, 선행절차 이행단계, 원안확정단계를 거쳐야 한다.</p> <p>④ 원안작성단계에서 방침결정, 초안작성, 업무관련 부서간 의견조정은 법제담당 부서인 <u>기획예산담당관</u>의 검토를 거쳐서 실시한다.</p> <p>⑤~⑥ (현행과 같음)</p> <p>⑦ 원안확정단계에서 <u>기획예산담당관</u>의 심사필 확인 "별표 4"을 사전에 받고 조례 규칙심의회에 부의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b>제4조(심사)</b> ① 각 <u>부서</u>로부터 심사의뢰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u>기획예산담당관</u>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u>부서장</u>에게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1.~5. (현행과 같음)</p> <p>② <u>기획예산담당관</u>은 자치법규를 심사할 때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해당 실과 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수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현 행	개 정 안
<p>③ <u>기획감사실장</u>은 자치법규안의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요청한다.</p>	<p>③ <u>기획예산담당관</u>은 자치법규안의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요청한다.</p>
<p>제5조(법률자료의 조사, 수집 및 연구)</p> <p>① <u>기획감사실장</u>은 자치법규의 제정이나 개폐건의를 위하여 자료를 수집한다.</p> <p>② 각 <u>실과소장</u>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상급기관으로부터 각종 법령 및 예고 등의 공포 또는 시행통지가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사본을 <u>기획감사실장</u>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제7조에 따른 질의내용 등이 전달된 경우에도 제2항과 같다.</p>	<p>제5조(법률자료의 조사, 수집 및 연구)</p> <p>① <u>기획예산담당관</u>은 자치법규의 제정이나 개폐건의를 위하여 자료를 수집한다.</p> <p>② 각 <u>부서장</u>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상급기관으로부터 각종 법령 및 예고 등의 공포 또는 시행통지가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사본을 <u>기획예산담당관</u>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제7조에 따른 질의내용 등이 전달된 경우에도 제2항과 같다.</p>
<p>제6조(자치법규 등의 관리) ① <u>기획감사실장</u>은 자치법규 등을 공포·발령할 경우에는 즉시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p>② <u>기획감사실장</u>은 필요할 경우 책자형태의 자치법규집을 발간할 수 있다.</p>	<p>제6조(자치법규 등의 관리) ① <u>기획예산담당관</u>은 자치법규 등을 공포·발령할 경우에는 즉시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p>② <u>기획예산담당관</u>은 필요할 경우 책자형태의 자치법규집을 발간할 수 있다.</p>
<p>제7조(법령 등의 질의) ① 각 <u>실과소</u>에서 소관사무에 대하여 읍면 또는 다른 기관이나 주민으로부터 법령 등의 질의를 받았을 때에는 소관부서에서 최종 결재전에 <u>기획감사실장</u>의 협의를 받아 처리한다.</p> <p>② 법령 등의 해석에 관하여 중앙부처, 경상남도 또는 외부기관에 질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행하고 사전에 <u>기획감사실장</u>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p> <p>1.~4. (생략)</p>	<p>제7조(법령 등의 질의) ① 각 <u>부서</u>에서 소관사무에 대하여 읍면 또는 다른 기관이나 주민으로부터 법령 등의 질의를 받았을 때에는 소관부서에서 최종 결재전에 <u>기획예산담당관</u>의 협의를 받아 처리한다.</p> <p>② 법령 등의 해석에 관하여 중앙부처, 경상남도 또는 외부기관에 질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행하고 사전에 <u>기획예산담당관</u>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p> <p>1.~4.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b>제8조(소송통보)</b> ① 각 <u>실과소</u>에서 그 소관사항에 관하여 군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을 제기할때 또는 피소되었을 때에는 다음 서류를 <u>기획감사실</u>로 통보하여야 하며 <u>기획감사실장</u>은 소송업무를 총괄한다.</p> <p>1.~2. (생략)</p> <p>② <u>실과소</u>의 소송수행자는 매 변론 후 소송수행 상황을 <u>기획감사실장</u>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소송수행자는 원칙적으로 소관부서 직원 중에서 지정 수행토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 직원과 공동 수행토록 하고 변호사를 선임 대리 수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시에는 <u>기획감사실장</u>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 사후 조치절차를 협의하여야 한다.</p>	<p><b>제8조(소송통보)</b> ① 각 <u>부서</u>에서 그 소관사항에 관하여 군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을 제기할때 또는 피소되었을 때에는 다음 서류를 <u>기획예산담당관</u>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u>기획예산담당관</u>은 소송업무를 총괄한다.</p> <p>1.~2. (현행과 같음)</p> <p>② <u>부서</u>의 소송수행자는 매 변론 후 소송수행 상황을 <u>기획예산담당관</u>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소송수행자는 원칙적으로 소관부서 직원 중에서 지정 수행토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 직원과 공동 수행토록 하고 변호사를 선임 대리 수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시에는 <u>기획예산담당관</u>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 사후 조치절차를 협의하여야 한다.</p>
<p><b>제9조(행정심판 청구서의 처리)</b> ① 행정심판청구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접수 일로부터 2일내에 답변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증거서류를 각 3부 작성 <u>기획감사실</u>로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u>기획감사실장</u>은 답변서를 행정심판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b>제9조(행정심판 청구서의 처리)</b> ① 행정심판청구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접수 일로부터 2일내에 답변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증거서류를 각 3부 작성 <u>기획예산담당관</u>으로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u>기획예산담당관</u>은 답변서를 행정심판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 1. 제안이유

2019. 1. 1. 시행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부서와 부서장의 명칭을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1) 실과소 ⇒ 본청 담당관·과, 직속기관, 사업소(이하 “부서”라 한다)
- 2) 기획감사실 ⇒ 기획예산담당관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3. 6.

거창군수

- 부여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고학길 440 등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실(☎055-940-3311~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부여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봉산리 1262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고제로 593-203	2009-12-28	2019-03-06	행정구역 고제면을 지나가는 도로라 하여 고제로라 명명	
2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고학리 710, 711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고학길 440	2009-04-01	2019-03-06	고학이라는 법정리명 반영	

## 거창군 삶의쉼터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3월 1일

###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상위 조례와 불일치한 명칭 통일
3. 주요내용
  -
4.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9년 3월 2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행복나눔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등
    - 주 소 : (우)50130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행복나눔과
    - 전 화 : 055-940-3124
    - 팩 스 : 055-940-3739
    - 이메일 : jojakchamsae@korea.kr

- 붙임 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1부.  
2.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1부. 끝.

##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례명 : 거창군 삶의 질터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조례(규칙) 제 호

##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1항, 제4조1항, 제10조1항의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시설의 구분) 거창군 삶의 쉼터는 <u>노인복지회관</u>, 여성복지회관, 장애인 복지관으로 구분하되 통합하여 관리·운영한다.</p>	<p>제2조(시설의 구분) 거창군 삶의 쉼터는 <u>노인복지관</u>, 여성복지회관, 장애인 복지관으로 구분하되 통합하여 관리·운영한다.</p>
<p>제3조(업무 및 기능) ① <u>노인복지회관</u>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③ (생략)</p>	<p>제3조(업무 및 기능) ① <u>노인복지관</u>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4조(이용대상) ① <u>노인복지회관</u>의 이용대상은 우리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과 해당 노인 으로 배우자로 한다. ② ~ ③ (생략)</p>	<p>제4조(이용대상) ① <u>노인복지관</u>의 이용 대상은 우리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과 해당 노인으로 배우자로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0조(식당운영) ① 군수는 <u>노인복지회관</u> 운영 활성화 및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경로식당 및 장애인 식당을 운영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p>	<p>제10조(식당운영) ① 군수는 <u>노인복지관</u> 운영 활성화 및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경로식당 및 장애인 식당을 운영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p>

## 관 계 법 령

### □ 노인복지법

[시행 2019. 1. 15.] [법률 제16243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 1. 29., 2013. 6. 4., 2017. 3. 14.>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 8. 3.>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삭제** <2011. 6. 7.>

②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 거창군 삶의쉼터 설치·운영 조례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12.31.)

1. “삶의 쉼터”란 **거창군노인복지관**, 거창군여성복지회관, 거창군장애인복지관을 통칭함을 말한다.(개정 2013.12.31.)
2. “위탁”이란 군수가 상호 계약에 따라 삶의 쉼터의 운영과 책임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맡겨 수탁자의 명의로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탁”이란 군수로부터 삶의 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는 것을 말한다.



## □ **현행 조례(규칙) 전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의 구분)** 거창군 삶의 쉼터는 노인복지회관, 여성복지회관, 장애인복지관으로 구분하되 통합하여 관리·운영한다.

**제3조 (업무 및 기능)** ① 노인복지회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문제상담 및 취업알선사업
2. 노인사회교육 및 후생복지사업
3. 노인건강지원사업
4.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

② 여성복지회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의 자질향상 및 경제적 기반조성을 위한 기술교육
2. 건전한 가정육성 등을 위한 각종교육
3. 지역사회 봉사 및 여성상담을 위한 활동지원
4. 그 밖에 여성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③ 장애인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상담·지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의료·직업·심리·사회교육·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사회생활 적응지도와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4. 장애예방 계몽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재활·자립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행사 및 체위향상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주간보호실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제4조 (이용대상)** ① 노인복지회관의 이용대상은 우리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과 해당 노인의 배우자로 한다.

② 여성복지회관의 이용대상은 우리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여성으로 한다.

③ 장애인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우리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상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이 아닌 자 중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는 이용할 수 있다.

**제5조 (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허가 취소, 입장거부,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2. 그 밖에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제6조 (위탁운영 공고)** 군수는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위·수탁 계약체결)** ①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와 위탁 관리·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계약체결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 관리·운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입찰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 (부담)**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원되는 예산이외의 경비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 (운영 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업무 및 회계서류를 조사 또는 감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0조 (식당운영)** ① 군수는 노인복지회관 운영 활성화 및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경로식당 및 장애인식당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경로식당 및 장애인식당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식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식비는 매년 초에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 (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삶의 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자체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체규정을 제정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직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복무관리, 상벌, 보수, 회계, 문서·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삶의 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거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 (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에 의거 「고척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 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려 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11명(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19. 3. 4. ~ 2019. 3. 18.(14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 지적재조사담당(☎055-940-33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2019. 3. 4.

## 거 창 군 수

별도붙임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거창군 공고 제2019 - 275호

**거창군 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76호선 외2)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경상남도 고시 제43호('85.03.11)로 최초 결정되고 거창군 공고 제2019-139호(2019.01.31.)로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중인 군계획시설(교통시설: 소로2-76호선, 소로2-58호선, 소로2-60호선)의 사업시행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03월 06일**  
**거창군수**

1. 사업개요

종류	사업명	위치		시행규모						시행위치		최초 결정일	비고
		읍	리	등급	류별	번호	연장	폭	면적	시점	종점		
도시 계획 시설	도시계획도로 (소로2-76호선)	거창	대평	소로	2	76	80	8	611	대평리 566-4	대평리 445-15	경고43호 ('85.03.11)	
도시 계획 시설	도시계획도로 (소로2-58호선)	거창	대평	소로	2	58	37	8	336	대평리 565-4	대평리 566-4	경고43호 ('85.03.11)	
도시 계획 시설	도시계획도로 (소로2-60호선)	거창	대평	소로	2	60	84	8	756	대평리 566-4	대평리 564-5	경고43호 ('85.03.11)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 : 거창군수(도시건축과장)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사업명 : 대평리 상아맨션(소로2-76호선 외2)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 열람기간: 신문개제 익일로부터 14일간

4. 사업의 착공일 및 준공예정일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

준공예정일 : 2020. 06. 30.

5.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및 권리에 관한 명세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붙임)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 적 (㎡)	편입면 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6,626	1,703					
1	거창읍 대평리	445-15	하천	68	68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2-2	(주)한국토지신탁			소로 2-76
2	거창읍 대평리	465-8	하천	7	7		(국)농림축산식품부			소로 2-76
3	거창읍 대평리	445-12	하천	129	129		거창군			소로 2-76
4	거창읍 대평리	446-3	하천	279	81	웅양면 한기리 458	김용태			소로 2-76
5	거창읍 대평리	445-11	하천	48	48		거창군			소로 2-76

6	거창읍 대평리	595-1	도	3,690	43		(국)농림축 산식품부			소로 2-76
7	거창읍 대평리	565-4	대	249	235		거창군			소로 2-76
8	거창읍 대평리	566-4	도	1,400	336		거창군			소로 2-58
9	거창읍 대평리	565-5	답	490	490	경남 거창군 거창읍 죽전1길 27-8	이호조외1인			소로 2-60
10	거창읍 대평리	564-5	도	266	266	경남 거창군 거창읍 죽전1길 27-8	이호조외1인			소로 2-60

※ 관계도면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6. 의견제출 및 열람

위 공람 기간 내 다음 항목을 기술한 의견을 거창군수(참조: 도시건축과장)에게 서면[우편주소: 50132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이나 전화(055-940-3592, 3595), FAX(055-940-3579), Email : [chanung@korea.kr](mailto:chanung@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 명:
-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끝”.



## 공인 폐기 · 등록 공 고

「거창군 공인조례」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공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3. 5.

## 거 창 군 수

1. 등록사유 : 민원발급용 인증기 구입 신규등록
2. 등록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 3. 5.
3. 등록공인의 명칭 및 인영

공 인 명	규 격	인 영
민원사무전용 거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인	2.1cm × 2.1cm	
민원사무전용 거창군체육시설사업소장인	2.1cm × 2.1cm	

4. 폐기공인의 명칭 및 인영

공 인 명	규 격	인 영
민원실전용거창군수인 통합증명발급기용(황)	2.4cm × 2.4cm	
민원실전용거창군수인 통합증명발급기용(중)	2.4cm × 2.4cm	
민원실전용거창군수인 통합증명발급기용(황)	2.4cm × 2.4cm	
민원실전용거창군수인 통합증명발급기용(중)	2.4cm × 2.4cm	
민원실전용거창군수인 통합증명발급기용(황)	2.4cm × 2.4cm	
민원실전용거창군수인 통합증명발급기용(중)	2.4cm × 2.4cm	

●거창군 공고 제2019 - 277호

**송정 마동마을(소로3-26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계획 열람공고**

거창군에서 시행예정인 『송정 마동마을(소로3-26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편입 토지 및 지장물조서를 열람 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하여 주시고 보상협의를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03월 07일  
거창군수**

**1.사업개요**

- 가. 사업명 : 송정 마동마을(소로3-26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나. 위치 :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일원
- 다. 사업량 : 도시계획도로 개설 L=130.0m, B=6.0m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명칭 : 거창군수(도시건축과장)
- 나. 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3.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가. 토지 :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일원
- 나. 물건 : 편입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물건 일체
- 다. 열람내용 : 사업구간 내 편입토지 등 확인 및 누락 여부
- 라. 보상조서 : 붙임문서 참조

**4. 열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이의신청) 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경제산업국 도시건축과  
☎055-940-3592, 3595
- 다. 이의제기 :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보상협의 및 지급시기**

- 감정평가 실시 결과 개별통지 예정

**6. 보상방법 및 절차**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3인이상(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2인)에게 평가를 의뢰한 후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여 거창군과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 후 보상금 지급

【단, 동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 감정평가의뢰 및 실시 → 보상액산정 → 보상협의 요청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 (협의불성립 시) 수용재결 → (협의불성립 시) 공탁

7. 기타사항

가. 보상조서 물건내역은 추후 분할측량 및 계획변경, 재조정,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으며,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함

나. 본 열람공고와 별도로 기 손실보상 협의 요청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나 송달 불능 등으로 인한 미수령자에게는 본 열람공고로 송달에 갈음합니다.

○토지조서(소로3-261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면 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16,748	1,112					
1	거창읍 송정리	1057	도	2,931	3		국(건설부)			
2	"	1061-11	구	852	155		국(농림수산 부)			
3	"	576-2	전	516	34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화리골길 103-13	이홍월			
4	"	505-2	목	1,772	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마동길 108	김영조	근저당	거창 축협	
5	"	569-1	대	435	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로64,105동502호 (배머루마을인정베네치아빌리지)	안금옥외1인	근저당	신원 농협	
6	"	570	답	16	16	거창읍 송정리 564-4	김점술	근저당	신원 농협	
7	"	569-4	대	435	3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로64,105동502호 (배머루마을인정베네치아빌리지)	안금옥외1인	근저당	신원 농협	
8	"	562-1	잡	717	4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마동길 108	김영조	근저당 지상권	거창 축협	
9	"	569-2	답	1,305	14	대구달서구장기동814-1 장기파랑새마을 503동 1203호	성태원			
10	"	562-9	잡	12	12	거창군 거창읍 마동길 116	허순례			
11	"	562-8	대	352	24	거창군 거창읍 마동길 116	허순례			
12	"	569-3	답	3,661	16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459	최덕산			
13	"	562-2	잡	757	65	거창군 거창읍 마동길 128-8	김귀행	근저당 지상권	거창 사과 농협	
14	"	567	답	248	248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459	경주최씨덕 산정종중			

15	"	562-3	대	241	20	거창읍 소만2길 62, 105동104호(소만주공아파트)	정홍자			
16	"	566	대	598	50	거창읍 소만2길 62, 106동1202호(소만주공아파트)	이현숙	근저당	거창농협	
17	"	562-6	대	522	43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대실역북로26 208동 1102호(대실역청 아람 2단지)	여태훈			
18	"	566-4	답	205	180	거창읍 소만2길 62, 106동1202호(소만주공아파트)	이현숙			
19	"	562-4	대	175	29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562-4	차일웅			
20	"	562-7	대	665	113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1길 114-9	김중렬	근저당 지상권	거창농협	
21	"	566-6	답	333	5	거창군 거창읍 공수들8길 64	윤동문			

○지장물조사(소로3-261호선)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용도	구조	규격(수량)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1	거창읍 송정리	569-4	수목	남천나무	160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로64,105동502호(배머루마을인정베네치아빌리지)	안금옥			
2	"	562-1	담장	블록(1.7*0.11*8m)	1.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마동길 108	김영조			
3	"	562-8	담장	블록	1.6㎡	거창군 거창읍 마동길 116	허순례			
4	"	562-8	담장	블록(1.65*0.17*4m)	1.1㎡	거창군 거창읍 마동길 116	허순례			
5	"	566	담장	블록(0.45*0.18*18m)	1.5㎡	거창읍 소만2길 62, 106동 1202호(소만주공아파트)	이현숙			
6	"	566		배롱나무	2주	거창읍 소만2길 62, 106동 1202호(소만주공아파트)	이현숙			
7	"	566		조경수	5주	거창읍 소만2길 62, 106동 1202호(소만주공아파트)	이현숙			
8	"	562-6	담장	블록	0.2㎡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대실역북로26 208동 1102호(대실역청 아람 2단지)	여태훈			
9	"	562-6	담장	블록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대실역북로26 208동 1102호(대실역청 아람 2단지)	여태훈			
10	"	562-6	담장	블록	0.3㎡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대실역북로26 208동 1102호(대실역청 아람 2단지)	여태훈			

11	“	562-4	창고 (가추)	스레이트	37㎡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562-4	차일웅			
12	“	562-7	담장	웬스	34㎡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1길 114-9	김중렬			

##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태양광발전)양수인가 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03. 06.

거창군 

1. 공 고 명 : 전기(태양광발전)사업 양수 인가 공고
2. 공고기간 : 2019. 03. 06. ~ 2018. 03. 24.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4. 공고내용 : 전기(태양광발전)사업 양수인가 내역  
가. 해광5호 태양광발전소

구분		양 도 인	양 수 인
태양광 발전사업 (거창군 제2017- 144호/ 경남 제2017- 320호)	발전소명	해광5호 태양광발전소	해광5호 태양광발전소
	대 표 자	최 대 길	이 환 철
	소 재 지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4길 7-13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7길 29, 106동 1402호(대경빅스빌)
	설치장소	경남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산 27-3 (토지 위)	
	설비용량	99kW(사업허가 용량)	
	허가일자	2018. 04. 03.	
	양수(예정)일	2019. 03. 06.	

5. 양수내용 : 양도인의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사업허가)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 양수. 끝.

## 2019년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보수 보조사업 신청 안내 공고

중증장애인 가구의 주거환경개선 및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2019년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보수사업』 신청 안내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을 원하는 장애인 가구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6일

거 창 군 수

###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보수사업
- 추진기간 : 2019. 4월 ~ 9월
- 사 업 량 : 1가구
- 지 원 액 : 가구당 5백만원
- 사 업 비 : 5백만원(도비 30%, 군비 70%)
- 지원대상 : 1~2급 장애인, 타 장애와 중복된 지적 또는 자폐성 3급 장애인

### 2. 지원대상 선정기준

- 생활정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신청 가구가 없을 경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19년도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가구에서 선정)
- ※ 가구구성
  - 기초수급자 가구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를 동일 적용
  - 가정해체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적용 가능
-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장애인(비자가가구: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선정 가능)
- 지원 제외자
  - 도 및 시군으로부터 이미 지원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 추천으로 이미 개조 지원을 받은 자
- 지원 우선순위
  1. 장애등급이 높은 자로서 지체 및 뇌병변, 시각장애인
  2. 가구원 중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3. 지체 및 뇌병변·시각장애와 다른 장애유형이 중복된 가구
  4. 고령장애인
  5. 저소득장애인

### 3. 사업내용

- 개보수 내용: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주출입구 접근로(마당포장) 경사로 설치, 지붕개량 및 주택 개조 시 파손된 도배, 장판 등
- 추진절차: 사업공고(군) ⇒ 사업신청(보조사업자) ⇒ 심사 및 대상자 선정/통보(군) ⇒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결정(군) ⇒ 보조사업 추진(보조사업자) ⇒ 보조금 청구(보조사업자) 및 교부(군) ⇒ 정산서 및 추진실적 제출(보조사업자)

### 4.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19. 3. 6. ~ 3. 20. ※ 근무시간 내 접수
- 접수장소 : 신청인(장애인가구) 주소지 읍면사무소(복지담당부서)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각 1부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보호자 방문신청
- 선정결과 통보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통보
- 문 의 처: 거창군청 행복나눔과 장애인복지담당(☎ 940-3742)

<붙임 1>

##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 자 현 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장애유형 및 등급		저소득층 구분	기초수급자/차상위
사 업 내 용	사 업 명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보수사업	거창군 소관부서	행복나눔과
	사업기간		주택보유 현황	자가/임대
	세부공사 내용	- 공사내용: - 시공업체: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인 또는 서명)

※ 첨부서류: 지원사업 추진 계획서 1부.

거창군수 귀하

##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계획서

### 1. 사업개요

- 사업명:
- 사업비:
- 사업기간:

### 2. 사업추진방법

- 
- 

### 3. 세부사업 추진계획

- 
- 
- 

### 4. 사업비 집행계획

- 
- 

### 5. 사업의 기대효과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재

- 
-



거창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19-7호

## 제23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3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19년 3월 12일(화) 10:00
2. 집회장소 : 거창군의회 본회의장

2019년 3월 5일

거창군의회 의장 이 흥 희